

· 작성부서	코스닥시장본부 상장심사부		
· 담 당 자	부장 : 서상준(☎02-3774-9700) 팀장 : 이효정(☎02-3774-9710)		
· 배 포 일	2016. 6. 8(수)	· 배포부서	홍보부 (☎ 3774-4082~4089)

※ 이 자료는 배포 후 즉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

주요 내용

1 규정 개정 개요

- 한국거래소(이사장 최경수)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'16.6.13(월)부터 시행
 - 외국기업 및 거래소가 개설한 인수합병중개망* 등록기업에 대한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
 - * 거래소가 중소·벤처기업 등의 인수합병 중개지원을 위해 개설한 M&A중개망
 - 매각제한 규제 완화, 기술성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연장 및 장기 영업손실 실질심사요건화 등 규제 합리화

2 제도 정비 주요 내용

- (외국기업 상장규제 합리화) 외국기업 2차상장 범위 확대*,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처리기준 인정** 및 공시대리인 선임 부담 완화 등
 - * 적격해외증권시장(미국 등 9개 시장) 상장법인 → 모든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 (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개정)
 - **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기준과 상장규정상 회계처리기준 간 차이에 대한 별도 소명시 인정
- ⇒ 우량 해외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국내 상장 기회가 확대되고,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추진 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

□ **(M&A중개망 등록법인 우회상장 간소화)** KRX가 개설한 인수 합병중개망에 등록된 기업이 일정요건 충족* 시 우회상장 신청 절차 및 심사 간소화**

* ① M&A중개망 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, ② 매출액 100억 이상·영업이익 有, ③ 거래소가 지정한 M&A중개망 등록 전문기관의 추천이 있을 것

** 심사기간 단축(45영업일→30영업일) 및 기업계속성 심사 완화 가능

⇒ M&A중개망 등록기업 중 우량비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기업과 기업결합 시 혜택 부여로 건전한 M&A 활성화 유도

□ **(매각제한 규제 완화)** 특수관계인이 부득이한 사유*로 상장 추진 시 보호예수가 불가능한 경우, 최대주주등이 동일수량을 대신 보호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

* 특수관계인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등(주식총수의 5% 미만 소유 특수관계인에 한정)

⇒ 신규상장 추진시 최대주주등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특수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추진이 가능

□ **(기술성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기준 개선)**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한 경우,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* 유예기간을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 추가 연장(현행 3년→5년)

* (현행)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

⇒ 기술성장기업은 매출시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기술성장기업의 연구 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

□ **(장기 영업손실 퇴출요건 실질심사화)** 형식적 퇴출요건인 장기 영업손실 요건*을 기업별 특성 등을 감안, 실질심사요건으로 전환

* (현행) 4년 연속 영업손실시 관리종목 지정, 5년 연속 발생시 상장폐지

⇒ 장기영업손실기업 중 유상증자 등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인 퇴출 유예 가능

- (기타 제도 개선사항)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 대상기업이 개선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해당 개선내용 완료 시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
* (현행) 1년 6개월 이내에서 개선기간 부여 가능

⇒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 등으로 상장적격성이 회복된 기업은 조기에 상장폐지 대상기업에서 벗어나 기업이미지 회복 가능

3

기대 효과

- 외국기업 및 기술성장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 경감 및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 도모
 - 향후에도 거래소 코스닥시장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성·기술성을 갖춘 국내·외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예정임

※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krx.co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